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64호

「사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사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사도법 시행규칙」 내용 중 타법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(안 제5조제1항제2호, 별지 제3호 서식 개정)

- 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

당 초	「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수 정	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884 / 팩스 : 044-201-5588